

인천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18가단293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레

담당변호사 황봉환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김봉진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8. 1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2017. 9. 13.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영업권에 관하여 2017. 10. 11. 체결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2,68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2017. 9. 13.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¹⁾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영업권에 관하여 2017. 10. 11. 체결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E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영업권에 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2017. 9. 13.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은 132,068,816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영업권에 관하여 2017. 10. 11. 체결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은 132,068,816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068,816원과 그 중 85,150,000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

1) 원고는 C에게, 2011. 11. 18. 20,000,000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2013. 2. 2.부터 2013. 12. 24.까지 합계 35,150,000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2016. 3. 22. 30,000,000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2) 원고는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8513호로 대여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2018. 8. 22. ‘C은 원고에게 85,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양도양수계약

- 1) C은 2012. 9. 12.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편의점(F점, 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개점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 2) C은 D와 사이에 인천 부평구 G,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점포에서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 3) C의 채권자인 H은 2017. 6.경 C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C의 자녀인 피고는 C의 부탁을 받아 2017. 8. 28. C과 공동으로 H에게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7. 10. 3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4) 그러나 위 가맹계약 종료 무렵 소외 회사가 C과의 가맹계약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하자 피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편의점에 관하여 가맹점 신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되, 2017. 9. 13. D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기간 2017. 9. 9.부터 2019. 9.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 5) 피고는 2017. 9. 2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편의점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0. 11. C,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소 외 회사와 C(이하 양도자라 함) 및 피고(이하 양수자라 함)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소외 회사와 양도자는 이 사건 편의점에 대하여 2012. 9. 28. 체결한 가맹계약을 쌍방 합의하에 2017. 10. 12.자로 해약하고 폐점기로 하며, 소외 회사와 양도자간 합의해약에 따른 일정 및 절차는 소외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양도자는 해약일까지 성실히 점포를 운영하며, 해약일까지 상호 채권/채무에 관련하여서는 소외 회사가 산정한 결과에 따른다.
 3. 양도자는 양도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편의점 내에 있는 재고상품을 양수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재고상품대금을 소외 회사에 대한 양도자의 채권채무에 포함시켜 정산하며 본 합의에 따라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4. 전 3항에 있어 재고상품대금의 금액은 2017. 10. 11.자 재고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한다.

이 경우 재고조사시 단품별 스캐닝 결과에 따라 양도/양수자는 반드시 양수도 당일 쌍방 검수를 실시해야 한다.

5. 전 4항의 재고상품대금은 소외 회사와 양수자간의 채권/채무계정인 본부계정으로 정리한다.

6. 양도인과 양수인이 관련된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과금 및 기타 제비용은 사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7. 양도인은 회사가 제공한 I노하우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서류 용구등을 소외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6) 피고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H 명의의 K조합 계좌로 2017. 10. 20.

7,000,000원, 2017. 10. 21. 8,000,000원이, 피고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H 명의의 K조합 계좌로 2017. 10. 24. 10,000,000원, 2017. 10. 25. 5,000,000원, 2017. 10. 26. 10,000,000원, 2017. 10. 27. 10,00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7) C은 2017. 9.경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E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별지 제2목록 기재 영업권을 양도하였는바, 위 채권양도 및 영업권양도는 C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한 것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주위적으로 D 및 소외 회사에 위 각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영업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해야 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의 채권의 범위 내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및 양수한 영업의 가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에게 85,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대여금채권은 위 각 채권양도 및 영업권양도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1) C과 피고 사이에 서면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바 없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과 피고 사이에, 2017. 9. 13. 별지 제1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2017. 10. 11. 별지 제2목록 기재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고 한다)에 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 2) 원고는 이에 대하여 각 양도양수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이 법원의 J은행에 대한 2021. 3. 11.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L단체에 대한 2021. 6. 4.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위 각 양도양수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고, 실제로 C이 여전히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3) 한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위 각 양도양수계약 당시 C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 가맹계약 재계약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가 C을 대신하여 C의 채권자인 H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해주는 대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이 사건 영업권을 양수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고 역시 선의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J은행에 대한 2021. 3. 11.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L단체에 대한 2021. 6. 4.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부친인 M 또는 C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J계좌로 각 돈을 입금받아 이를 그대로 H에게 이체하거나 이 사건 편의점 운영 수익 중 일부를 H에게 이체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변제를 위하여 피고가 출연한 돈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편의점을 통하여 계속 수익을 얻고 있는 반면 C은 아무런 재산 및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C이 모녀지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양도양수계약은 피고와 C이 통모하여 C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위 각 양도양수계약이 위 가맹계약에 대한 재계약이 불가능한 것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위 각 계약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C 역시 위 각 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도 인정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 취소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 방법과 범위

가)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79 판결 등 참조).

나) 비록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을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점포건물의 위치는 가맹점의 상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로 보이고, 점포건물에 관한 권원 또한 가맹계약에서 필수적인 요소이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역시 이 사건 영업권과 일체로 양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양도양수계약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위하여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양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영업권의 가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편의점에 관한 권리금을 42,686,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3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영업권의 가액을 위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 합계 72,686,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영업권의 가액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가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위 각 양도양수계약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72,68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소외 회사가 2017년분 영업이익금 162,180,915원을 2019. 12.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거나, 2018년분 영업이익 154,365,612원 역시 위 영업권에 포함되므로, 위 각 양도양수계약은 원고의 채권인 132,068,816원(=85,150,000원+위 돈에 대한 2016. 3. 23.부터 2018. 7. 10.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6,918,816원)의 한도 내에서 전부

취소되고, 위 금액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돈을 수령하였더라도 수령한 영업이익금 상당액이 곧바로 이 사건 영업권 가액이라고 평가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주희

별제 제1목록(임차보증금 반환채권)

1. 임차부동산의 표시

가.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1층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 1층

나. 임차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

다. 임차할 부분 : 1층 일부

1. 임대차계약의 내용

가. 보증금 : 금 30,000,000원

나. 월차임 : 1,500,000원

다. 임대차기간 : 2017. 9. 9.부터 2019. 9. 8.까지

1. 임대인

성명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1. 양도 전 임차인

성명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호

1. 양수인, 임차인

성명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호

1. 양도채권의 종류

 이 임대인 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이 상 -

별제 제2목록

1. 가. 가맹회사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나. 양도가맹업주(계약자) : ()(1) 점포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1층(2) 점 포 명 : 점(3) 일련번호 : (4) 관리번호 :

(5) 계약체결일 : 2012. 9. 12.

(6) 계약당시 계약자 주소 : 인천시 계양구 호다. 양수가맹업주(계약자) : ()(1) 점포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1층(2) 점 포 명 : 점(3) 일련번호 : (4) 관리번호 :

(5) 계약체결일 : 2017. 9. 22.

(6) 계약당시 계약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호

라. 영업권의 종류

가맹계약에 의하여 가맹업주가 가맹회사에 가지는 가맹계약상 권리 일체

- 1) 2020. 12. 17.자 청구취지변경서상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로 선행하여 판단한다.